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이로운게 바뀌었습니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용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고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구성))
- 학칙변경: 지도·감독기관승인 → 학교장 자율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학교가 정함.

###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많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중 두발·복장 규제 금지 조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실효됨.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9조 제4항(두발 길이 규제 금지), 제11조 제3항(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 제12조 제2항(소지품 검사 금지)조항은 상위법과 상충.

### ● 더 높은 민주주의 실현

학생인권조례	VS	학칙(개정 시행령)
주어진 인권 권리만 강조	권리의 성격	권리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기회 부여, 참여를 통해 권리와 책임 균형있게 학습
교원, 학부모 소외	학교구성원 역할	학생, 학부모, 교원 참여

## 학생인권조례(안) 제정과 시행 으로 일어난 교육부작용?

###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침해 심화

- 학교폭력 2010년 2,014건으로 2009년 1,308건에 비해 54.1%나 급증(2011년 11월 도의회 제출자료)
- 2011년 학생체벌 35건에 반하여 학생의 교사폭행 49건 (2011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 ●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폭력 사항 더 악화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데 이용 가능.
-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어려움 (2012년 1월 11일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 ● 학생인권조례, 교사의 사명감 저하

-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크게 저하.
- 교원 10명 중 7명이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습권 및 수업권 침해를 경험(한국교총,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교원을 대상 조사결과)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

-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학생의 의무 조항이 없어 학생들은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 가능.
- 학생인권조례와 법규정의 난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우려.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무엇이 우러되나?

- 제6조(학생의 의사결정권)
- 제9조(신체의 자유)
- 제10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제11조(표현과 접회의 자유 보장)
- 제12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제13조(정보접근권)
- 제16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17조(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 제21조(급식에 관한 권리·검수권)
- 제26조, 제27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

## 제6조(학생의 의사결정권)

-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그리고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 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교사를 지나치게 대등관계로 보는 것임(재량활동과 선택과목 등은 정규 교육과정임)

## 제9조(신체의 자유)

-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 상위법령에서 간접체벌의 허용여부를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규인 조례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함.

⇒ 교실청소, 환경정리, 일손돕기, 교내외 봉사활동 등의 노작활동도 교육활동임.



## 제11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 ①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름표 착용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 ⑤ 학생들의 주장을 담은 흥보물은 학내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⑥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 집회의 자유보장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등의 문제 외에 정치적·정책적 사안까지 포함하여 교육주체들의 갈등 사항을 악화시킬 우려가 큼.  
 ⇒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정식 이름표」만 인권 침해로 규정함.  
 ⇒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육권 약화가 우려됨.

## 제12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 학생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는 교육권에 포함되어야 함.  
 ⇒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한 일기장 및 소지품 검사는 학교 폭력 예방 등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보아야 함.

## 제17조(차별의 금지)

- ① 학생은 성차(性差)나 성적(性的) 지향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 ⇒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문화 또는 성의식(性意識)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학교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제26조, 제27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 제26조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 제27조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교육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보장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두어 별도의 보고나 의논의 대상에 교육감, 교장, 교감이 제외되어 있음.  
 ⇒ 학생인권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육감에 대해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